

朝鮮朝의 流刑制度和 濟州島

高 昌 錫*

目 次

I. 序 言	Ⅲ. 濟州流配人の 動向
Ⅱ. 朝鮮朝의 流刑制度	Ⅳ. 結 論

I. 序 言

다 아는 바와 같이 流刑은 罪人을 邊境이나 絶島로 귀양보내어 安住케 하는 刑罰이다. 물론 罪인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중요한 목적은 罪人을 먼 지방에 격리시킨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 英國에서는 호주를,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流刑地로 삼았는데, 프랑스의 나폴레옹 I세가 세인트헬레나 섬에 격리된 것도 유형에 해당한다. 中國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三國 시대부터 그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가 流配地로 이용된 것은 高麗 시대부터였다. 고려를 복속시킨 元나라가 三別抄 정벌 직후, 제주도를 그들의 直轄地로 삼아 몇 차례에 걸쳐 盜賊과 罪人을 流配시켰고¹⁾, 심지어는 王族(魏王 阿木哥, 李蘭奚大王)과 官吏(徽政院使 羅源) 僧侶까지도 유배하였다.²⁾ 元나라의 뒤를 이은 明나라에서도 元나라

* 人文大學 史學科 助敎授

- 1) 「高麗史」 28, 忠烈王 元年 4월 壬子條, 同王 3년 5월 戊戌條, 8월 庚辰條.
- 2) 同上書 34, 忠肅王 4년 1월 壬申條, 同 36, 忠惠王 後元年 2월 丙戌條.

세력이 최후까지 남아 있었던 雲南을 平定한 후, 梁王의 家屬인 拍拍太子·六十奴 및 愛顔帖木兒, 그리고 漠北을 정벌하였을 때 귀순해 온 達達親王 등 80 여호를 모두 제주도에 安置시킨 바 있다.³⁾

한편 高麗에서도 高宗 45년(1258) 正月에 宋吉儒, 忠惠王 後4년(1343) 4월에 僧 翬仙, 忠穆王 3년(1347) 6월에 趙得球, 同王 4년 12월에 僧 宗範, 恭愍王 4년(1355) 10월과 12월에 任君輔와 金鏞을 각각 제주도에 유배시켰다.⁴⁾ 더우기 同王 22년 12월에는 僧 釋器를 제주도 水精寺에 보내어 安置시키도록 하였으나 몰래 北邊으로 亡命한 일이 있으며⁵⁾, (제주도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다) 恭讓王 4년(1392)에는 慶尙道都巡問使·判開城府使를 거쳐 藝文館大提學에까지 오른 韓 蕤이 丹陽君 禹成範의 일파로 지목되어 李成桂에 의해 濟州島 旌義縣에 유배되었다.⁶⁾

또한 麗末 鮮初에 이르러서 많은 정치적 亡命客들이 모여든 곳도 제주도였다.⁷⁾ 그들은 제주도에 정착하여 入島祖가 되었는데 하면, 流配人 중에서도 赦免 후 그대로 정착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더우기 유배인들이 제주도의 학문 발전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점은 대단하였다. 즉 自生的인 문화 바탕 위에 유배인들에 의해 전래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융합되어 새로운 제주 문화가 창출된 것이다.

本稿의 叙述은 朝鮮朝의 流配制度和 제주 流配人의 動向으로 크게 나누어 前者에서는 《大明律》의 準用過程과 流刑의 名義 및 流刑地에 대해서 살피고, 後者에서는 流配者의 身分과 유배의 路程, 島內의 分布狀況과 그들의 功過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로 기술할 것이다.

3) 拙稿, “元明交替期の 濟州島” 「耽羅文化」 4, 1985, pp. 21~22.

4) 「高麗史」 24, 高宗 45년 1월 癸丑條, 同 36, 忠惠王 後 4년 4월 庚子條, 「高麗史節要」 25, 忠穆王 3년 6월條, 「高麗史」 37, 忠穆王 4년 12월 乙丑條, 同 38, 恭愍王 4년 10월 癸丑條, 12월 辛未條.

5) 同上書 44, 恭愍王 22년 12월 戊戌條.

6) 「濟州道誌」(上) 1982, pp. 114~117, 「濟州市 三十年史」 1985, p. 166.

7) 同上

II. 朝鮮朝의 流刑制度

朝鮮朝의 刑罰體系가 中國 明나라의 《大明律》을 準用했음은 周知하고 있는 사실이다. 즉 《經國大典》에는 “大明律을 사용한다”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太祖의 即位敍書에도 “高麗末期에는 刑律이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刑曹·巡軍府·街衢所가 각기 所見을 고집하여 형벌이 적당하지 못했으니, 지금부터는 刑曹는 刑法·聽訟·鞫詰을 관장하고, 巡軍은 巡綽·捕盜·禁亂을 관장할 것이며, 그 刑曹에서 판결할 것은 비록 笞罪를 범했더라도 반드시 謝貼(職牒)을 취하고 관직을 파면시켜 累가 자손에게 미치게 하니, 先王이 법을 만든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刑을 판결하는 官員은 무릇 公私의 범죄를 반드시 《大明律》의 宣勅을 追奪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謝貼을 회수하게 하고, 資產을 관청에 몰수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家產을 몰수하게 할 것이며, 그 附過해서 還職하는 것과 收贖해서 해임하는 것 등의 일은 일체 律文에 의거하여 죄를 판정하고 그 전의 폐단은 따르지 말 것이며 街衢所는 폐지할 것이다.”⁹⁾라고 하여, 정식으로 《大明律》을 依用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리하여 《大明律》은 《經國大典》에서 그 사용의 원칙이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 많아서 허다한 例外規程과 補充法規가 나오게 되었다. 즉 英祖 20년(1744)에 刊行한 《續大典》에서는 “原典에 의하여 《大明律》을 사용하되, 原典·續典에 해당한 律이 있는 것은 二典을 좇아서 한다.”¹⁰⁾라고 하여, 어떤 범죄를 처단할 때 그 범죄에 해당하는 刑律이 《經國大典》이나 《續大典》에 明文 규정이 있는 것은 그것에 의할 것이나, 原·續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모두 《大明律》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첨가하고 있어 오랫동안 朝鮮王朝 刑法의 中樞를 이루었다. 그러나 《大明律》이라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면 受敎에 의하여 다소 고쳐지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大明律》은 보통법의 위치에 있고 《經國大典》 이하의 朝鮮王朝 法典

8) 「經國大典」 5, 刑律 用律條.

9) 「太祖實錄」 1, 太祖 元年 7월 丁未條.

10) 「續大典」 5, 刑律 用律條.

상의 處罰法規는 특별법의 성질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朝鮮朝의 刑罰體系는 《大明律》에 의거해서 笞刑·杖刑·徒刑·流刑·死刑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른바 五刑이라 하는 것이다. 원래 五刑은 中國에서는 古代 이래의 기본적인 형벌 체제였다. 그러나 그 종류에 있어서는 隋·唐 이전과 이후의 내용이 다르며, 明律은 곧 隋·唐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다. 《大明律》序頭에는 五刑의 명칭과 적용범위, 刑量, 실시 방법 등을 설명한 〈五刑圖〉와 〈五刑名義〉가 함께 실려 있다.

그 중 流刑은 사람이 重한 죄를 범하였을 때에 차마 死刑까지는 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귀양보내어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¹¹⁾ 여기에는 반드시 杖刑이 併科되었다. 杖 100을 쳐서 2천 리의 먼 곳에 귀양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2천5백 리와 장 100, 3천 리와 장 100의 3 등급이 있고 每 500 리마다에 刑 한 등이 加減된다. 그런데 《增補文獻備考》 138, 刑考 諸律類記條에는 流刑을 세분화하여 杖 100에 流 2천 리, 장 100에 유 2천5백 리, 장 100에 유 3천 리, 장 100에 遷徙(移住), 장 100에 充軍, 장 100에 邊遠充軍, 장 100에 水軍充軍, 徒配, 장 100에 定配, 勿限年(無期)定配, 장 100에 遠地定配, 邊遠定配, 極邊定配, 장 100에 絕島定配, 減死定配, 爲奴 등으로 구분하였다. 杖 100이란 귀양보낼 때 杖 100을 쳐서 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해당되는 罪目이 同書에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引用을 略한다.

그런데 2천 리에서 2천5백 리, 3천 리 등 거리를 기준으로 한 流刑의 기본적인 3 등급의 규정은 당시 우리나라 실정에는 불합리한 것이었다. 국토가 넓은 中國에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었으나 국토가 좁은 우리 나라에서는 지리적 제약이 있어, 가령 〈流三千里〉의 刑은 집행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實地에 있어서는 범죄인의 居所를 표준으로 하여 流刑의 등급에 따라 어느 곳에서 어디로 보낸다는 지방을 지정하여 이에 대신하였다. 즉 《大明律直解》에는 《大明律》에 규정되어 있는 條項 외에 直解의 解譯에서 우리 나라의 地名과 地理에 따른 〈徒流遷徙地方〉條를 신설하여 우리 나라 獨自의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徒刑이나 流刑·遷徙刑을 받은 죄인을 服役시키기 위해 보내는 지방을

11) 「大明律」五刑名義條에 ‘流者 謂人犯重罪 不忍刑殺 流去遠方 終身不得回鄉 自二千里至三千里爲三等 每五百里爲一等加減’이라 하였다.

정한 것이다.¹²⁾ 즉 徒刑은 정해진 기간, 정해진 장소에서 勞役に 복무하는데, 鹽場에서는 매일 소금 3斤을 굽고, 鐵場에서는 매일 철 3斤을 불리도록 하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京城에서 徒役に 해당하는 죄인을 配所로 보낼 때에는 먼 곳은 경상도, 중간은 전라도·楊廣道(경기도), 가까운 곳은 西海道(황해도)·交州道(강원도)에, 西海道에서는 경상도에, 交州江陵道(강원도)에서는 전라도에, 양광도에서는 平壤道(평안도)에 있는 製鹽·製鐵所에 각각 付處시켰다.

流刑의 3 종류에 해당하는 죄인을 귀양보낼 때에는 流配地의 遠近을 따져 각 처의 荒蕪地와 해변의 각 고을에 보내어 安置시켰다. 京城은 경상도에, 중간은 전라도에, 서해도에서는 경상도에, 교주강릉도에서는 전라도에, 양광도에서는 평양삭방도(평안도) 지방에 각각 보내어 安置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世宗實錄》 48, 世宗 12년(1430) 5월 甲寅條의 兵曹의 啓에는 “죄를 범하여 유배시키는 곳은 일찌기 자세히 작정하지 아니하고, 안팎 관리들이 임시로 요량하여 정하였기 때문에 멀고 가까움이 적당하지 못했다.”고 전제 한 다음, 특히 流刑의 配所에 대해서는 전술한 《大明律直解》의 내용이 未盡하다 하여 새로이 각 도를 기준으로 한 流刑地를 정해서 올렸는데 그 내용은 別表와 같다.

이에 의하면, 朝鮮 시대의 유형지는 주로 濱海(島嶼포함)와 內陸지방이었으나 한편 始面이라 하여 京畿 등 근접한 곳인 경우도 있었다. 始面이란 서울 쪽에서 첫머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것은 服役의 기한이 아닌 지리상의 거리로써 刑의 輕重을 구분한 것이며, 실지로는 里數 보다는 유배될 지명을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流刑이 지방에서 보다는 중앙에서 王命에 의해 주로 정치범에게 적용되었던 형벌이므로, 그때 그때의 정치 상황이나 죄인의 身分差 혹은 罪狀의 輕重에 따라 유형지도 결정되었으며, 때로는 다른 곳으로 移配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었다. 더우기 朝鮮朝 중기 이후에 와서는 邊境이나 內陸 지방에의 유배는 아주 적었고, 대개 有人島나 無人島 등

12) 「大明律直解」 2, 名例律 ‘徒流遷徙地方’條.

※ 世宗 12年 5月 兵曹營의 내용

유형지 주소	流 三 千 里	流 二 千 五 百 里	流 二 千 里
경성(京城)· 경기좌우도· 留後司	경상·진라도·함길·평안도 濱海各 官	경상·진라도·평안·함길도 중앙각 관, 강원도 빈해각관	경상·진라도·평안·함길도 시면 각 관, 강원도 중앙각관
황해도	경상·진라도 중앙, 평안·강계도· 의주各官	진라도·경상·평안·함길도 始面 各 관	충청도 빈해, 강원도 중앙각관
평안도	충청도 濱海各官, 함길도 중앙각관	충청도 중앙각관, 강원·함길도 시 면각관	충청도 시면각관
충청도	평안·함길도 중앙각관, 경상·진 라도 빈해각관	평안·함길도 시면각관, 강원·황 해도 중앙각관	진라도·경상도 중앙, 황해 함길도 시 면각관
진라도	경상좌도 빈해각관, 함길·평안도 중앙각관	황해도 시면각관, 강원도 중앙각 관, 경상 좌도각관	강원도 시면, 충청상면·경상우도 각관
경상도	진라우도 빈해각관, 평안도 중앙각 관	충청·강원·진라도 중앙각관	충청도 시면, 진라도 좌도각관
함길도	경상·충청·경상우도 빈해각관	경상·진라도 중앙각관, 황해도 빈 해각관	충청·황해도 중앙, 진라도 경상도 시 면각관
강원도	진라도·경상우도 각관, 황해도 빈해 각관	진라도·경상도 중앙각관, 황해도 빈 해, 평안도 시면각관	충청·황해도 중앙, 평안도 시면, 경상·진라좌도 빈해각관

絶海孤島에의 유배가 많았다.¹³⁾ 그것은 黨爭 등으로 그만큼 정치 기강이 무너지고, 반대파를 絶島에 완전히 고립시키자는 데에 연유한 것이다.

유배 대상의 섬으로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江華島나 白翎島 등 도처에 많은 섬이 있었으나 王族 등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이들 섬에 유배되는 경우가 드물었고 대부분의 경우는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연해에 위치한 絶島에 유배되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를 비롯하여 黑山島·珍島·荏子島·金甲島·智島·古今島·莞島·薪智島 등 전라도 연해의 諸島가 유배의 대상지로 많이 이용되었다. 원래 유형은 유배지에 방치하여 그 지방민과 混居하는 일이 많았으나, 한편으로 그곳에 安置·充軍하는 방법도 있었다.

安置란 유배지에서도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 거주를 제한하는 것이다. 대개 王族이나 高官·顯職에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었다. 또 罪質에 따라서는 특별히 恩典을 베푸는 처분으로 本郷安置가 있고, 이와 반대로 보다 엄중한 조치로서 圍籬安置 혹은 加棘安置, 絶島安置가 있었다. 본향안치는 본인의 고향에서만 유배생활을 하도록 하는, 죄가 비교적 가벼운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고, 圍籬 혹은 加棘 안치는 重罪人에게 적용되었는데, 거주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집 주위에 울타리를 치거나[圍籬], 가시덤불을 쌓고[加棘] 그 안에 죄인을 가두어 두는 것이다. 여기에는 外人의 출입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죄인은, 탕자나무가 전라도 지방에 많았기 때문에 이 형을 받은 사람은 대개 전라도 연안의 여러 섬으로 보내어졌다. 絶島 안치는 육지에서 떨어진 외딴 섬에서 유형 생활을 고독하게 치르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유형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격리 조치였다. 말하자면 중죄인에 대한 應懲의 조치로써 취해진 것이다. 그런데 《大典會通》5, 刑典 推斷條에는 “絶島에 官守가 없는 곳은 죄인을 編配하지 아니한다. 黑山島 등 極惡한 지역은 特教 이외에는 定配하지 않고 濟州 三邑은 罪名이 特重한 자 이외에는 定配하지 아니한다. 楸子島와 濟州牧은 特教 이외에는 定配하지 아니한다. 濟州 三邑人으로서 유배되는 자는 三邑內에

13) 高麗 때에는 斬·絞 二罪의 刑을 減除하여 無人島로 유배하고, 그 정상이 가련한 자는 有人島로 보내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高麗史」6, 靖宗 2년 8월 丙寅條에 ‘制昨覽刑部所奏 犯斬絞二罪 朕方在憂服 屢徵變旌 欲施好之德 以示恤民之心 其犯較絞二罪者 除刑配無人島 雖犯二罪 情有可矜者 配有 有人島 於是免死者百十六人’이라 하였다.

서 서로 定配한다.”라고 규정하여, 特敎 외에는 제주도에는 編配 즉 定配罪人の 配定을 제한하고 있다.

充軍刑은 죄를 지은 官員을 軍役に 服役시키거나 죄를 지은 平民을 賤役軍에 편입시켰던 것을 말하며, 《大明律直解》에는 이에 대해서도 지역을 정하여 “京城에서는 경상도·전라도에, 서해도에서는 경상도에, 교주강릉도에서는 전라도에, 양광도에서는 평양삭방도에 각각 보내어 充軍시킨다.”고 하였으며, 《大典會通》4, 兵典 番上條에는 “當番을 대신 선 자가 있으면 當者나 代理者나 모두 1년 기한으로 邊遠 지방에 充軍한다. 兵曹 관리가 만약 스스로 그 價金을 받고 사람을 대신 立番케 한 경우에는 그 人數의 多少에 불구하고 杖 100, 徒 3년에 처하고 當者は 제주도에 徒 3년하고 軍에 充用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罪名 외에도 제주도, 특히 大靜縣의 경우에는 다른 죄목으로 충군된 자가 많으며 爲奴刑으로 유배된 자도 허다했다.¹⁴⁾ 爲奴란 곧 爲奴編配로 罪人 또는 그 가족을 노비로 만들어서 徒流案에 기입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Ⅲ. 濟州 流配人の 動向

제주도는 朝鮮王朝 약 5 백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귀양살이했던 곳이다. 어느 流配인이 “제주도는 온 나라의 罪地요 流竄은 나라의 重法이라”¹⁵⁾고 한 글귀는 당시의 제주도의 사정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王族이거나 重臣이거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王命을 거역하거나 政事에 過失이 있을 경우 그 輕重에 따라 死刑이 아니면 遠地流配를 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國事처럼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水陸千里에 교통이 또한 불편하고 本土와는 격리된 絶海孤島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流配地로는 最敵地였다. 이러한 사실은 燕山君 4년(1498) 戊午士禍 때에 잡혀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中宗反正으로 풀려난 洪裕孫의 경우에서도 엿볼 수 있다. 洪裕孫은 世祖의 即位 이후 世俗의 영화를 버리고, 成宗 13년대(1482)부터 南孝溫·李摠 등과 모

14) 梁淳秘: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建大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82, p. 20.

15) 李健: 「濟州風土記」, 「濟州道誌」(上), p. 255.

임을 갖고 竹林七賢을 자처 老莊의 학문을 討論하며 세월을 보냈다. 당시 李克均 등이 이를 시기하고 모함하였는데, 이때 王은 그들을 北方邊地로 귀양보내라고 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野人에게 投降하여 亡命할 염려가 있다 하여, 洪裕孫만은 극구 제주도로 島配할 것을 奏請하였던 것이다.¹⁶⁾ 이는 제주도가 絶海孤島임을 감안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朝鮮朝 후기의 實學者 李重煥도 《擇里志》卜居總論 山水條에서 “濟州郡 동쪽과 서쪽에 있는 旌義·大靜 두 고을은 풍속이 제주와 대략 같다. 牧使와 두 고을 守衛이 예로부터 本土에서 왕래하였으나 風波에 漂流하거나 빠져죽은 일이 없고, 또 朝廷에 벼슬하던 사람(縉紳)이 많이 여기에 귀양왔으나 또한 풍파에 떠밀리거나 빠진 일이 없었다. 이 곳은 王의 德化가 멀리서 미쳐서 온갖 神이 받들어 順應하였음인 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여, 他島에 비해 많은 수의 벼슬아치들이 제주도에 유배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특히 中央政界에의 영향력이 강한 자일수록 제주도로 유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李重煥의 말과 같이 流配人이나 守衛들이 풍파에 표류하거나 빠져죽은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正祖 6년(1782) 4월 1일 全羅道 觀察使 朴祐源이 馳啓하여 “〈濟州牧에 移配하는 罪人을 실은 배가 漂失되어 行方을 알 수 없다〉고 하자 이에 놀란 王은 〈비록 죄인들이지만 다수 人命의 生死를 모른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며, 혹시라도 移配罪人이 달아나 異國에라도 표류한다면 그 결과가 심히 두려우니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¹⁷⁾고 한 것이라든지, 同王 15년 2월 7일 濟州牧使 李鴻運이 “移配罪人 李會遂와 僧 信圭 등이 바다를 건너다 바람을 만나 漂去했다.”¹⁸⁾고 啓奏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 제주·한반도간 海路에 있어 제주 해협을 건너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英祖 46년(1770) 12월 25일 科擧를 보기 위해 제주를 출발했던 張漢喆도 《漂海錄》에서 “耽羅에서 배를 타고 北陸으로 향하여 갈 때, 배가 반쯤 와서 서쪽으로는 크고 작은 火脫 섬들이 있고, 동쪽으로는 餘鼠·靑山의 섬들이 보이는데, 비록 바람이 자고 물결이 잠잠할 때에도, 水勢는 반드시 질펀히 흐르다가 치솟고 빙빙 돌아 모이는가 하면 어느덧 뭉글뭉글 흐르고 하여 여기를 지나려면 모두 위험해 하는 곳이라”고 지적하였

16) 金泰能, 「濟州島史論攷」 1982, p. 96.

17) 「濟州道誌」(上), p. 263.

18) 同上書, p. 264.

다. 더우기 朝鮮初 成宗 때 제주 敬差官으로 파견되었던 金溥도 奔喪하여 바람을 기다리지 않고 출발했다가 漂流을 당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제주해협은 바람과 물결이 매우 사나우므로 順風을 만나지 못하면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 때문에 朝廷의 명령으로 건너고자 하는 자가 비록 律令과 같은 긴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順風을 만나지 못하면 中途에 머물러 바람을 기다려야만 했고, 또 그 時日이 한두 달을 넘기는 수도 있었다.

朝鮮朝 약 5백년을 통하여 제주도에 유배되었던 자의 수는 무려 2백명에 가까우며¹⁹⁾, 개중에는 申鉉과 같이 84세의 最高齡者가 있었는데, (宋時烈은 83세 때 유배) 가장 어린 나이로는 昭顯世子の 3男 石堅으로 4세였다. 유배자의 身分도 위로는 廢主 光海君을 비롯하여 王族과 外戚·文武兩班·學者·僧侶·宦官 및 京中の 盜賊과 北方 國境 지방의 越境犯²⁰⁾에 이르기까지 各界各層이었다.

光海君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15년(1623) 仁祖反正으로 王位에서 쫓겨나 庶人(光海君)으로 강봉되고 江華島에 유배되었다가, 仁祖 15년(1637) 6월에는 제주도로 移配되어 同王 19년 7월 1일 67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약 4년을 謫去하였다. 이 光海君 在位 10년(1618) 10월에 仁穆大妃(宣祖의 繼妃)의 生母인 盧氏夫人 鄭氏가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仁祖反正 후 上京했으며, 宣祖의 7男인 仁城君과 그의 家族은 仁祖 6년 5월 柳孝立이 大北의 殘黨을 모집하여 謀反을 꾀할 때 仁城君을 王으로 추대하였다 하여 珍島로 유배시켰다가 얼마후 仁城君은 自盡케 하고 그의 家族은 濟州島로 移配시켰는데 《濟州風土記》의 著者 李健은 仁城君의 3男이다. 仁祖 13년 11월 夫人과 딸 姉妹는 석방되고 아들 3 兄弟는 강원도 襄陽으로 다시 移配되었다가 同王 15년에 석방되었는데 李健은 孝宗 8년(1657) 海原君에 봉해졌다. 仁祖의 장남인 昭顯世子の 遺子 3 형제는 同王 25년 5월에 姜嬪事件이 문제가 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는데, 그 때 장자 石鐵은 12세, 차남 石麟은 8세, 3남 石堅은 4세이었다. 姜嬪事件이란 丙子胡亂 직후 淸나라에 볼모로 갔다가 仁祖 23년(1645)에 世子嬪인 姜氏와 함께 돌아온

19) 同上書에 기록된 숫자는 160여명으로 나타났으나 그 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 金泰能(1982), p. 92.

世子가 2개월 만에 병사하자, 仁祖의 後宮인 趙昭容은 姜嬪이 죽었다고 誣告하여 서로 반목이 심하였다. 결국 姜嬪은 後園에 감금되었다가 다음해 3월에 賜死된 사건(일명 姜嬪獄事)이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世子の 어린 자식도 유배된 것이다. 그런데 장남과 차남은 제주 도착 이듬해에 병사하고 3남은 孝宗 1년(1650) 江華島로 移配되었다. (뒤에 慶安君으로 봉해짐) 그 후 두 아들 焜과 煌도 黨爭에 휘말려 肅宗 5년(1679) 3월 어머니인 慶安夫人과 함께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뒤에 전라도·강원도에서의 移配를 거쳐 同王 10년 12월에 석방되었는데, 그 이듬해 6월에는 特命에 의해 臨昌君과 臨城君에 각각 봉해졌다. 그리고 思悼世子の 두 아들 恩彥君과 恩信君도 英祖 47년(1771) 4월 王의 無謀한 虐待와 당쟁에 휘말려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恩信君은 謫所에서 사망하고 恩彥君(哲宗의 祖父)은 이듬해 3월에 석방되었다. 이들 외에도 王의 近族으로서 제주도에 移配되었던 光海君 때의 晉陵君 李泰慶과 英祖 때의 李增 등이 있다. 승려로는 明宗 때의 普雨, 顯宗 때의 志安, 正祖 때의 惠菴이 각각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그 중 普雨는 明宗 때 文定王后의 신임을 얻어 奉恩寺 주지가 된 후, 禪·敎 兩宗을 부활하고 3백여 寺刹을 국가 공인 淨利로 지정하는가 하면 僧料를 부활시키는 업적을 남겼으나 王后가 죽자 잇달은 排佛上疏와 儒林들의 탄압으로 결국 僧職을 삭탈당하고 明宗 20년(1565)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牧使 邊協에게 피살되었다. 宦官 중에서는 燕山君 때의 金舜孫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王의 亂暴한 행위를 泣諫한 것이 罪가 되어 濟州島 大靜縣에 充軍되었다가 뒤에 民戶로 편입되어 軍役に 종사하면서 제주도에 일생을 마쳤다.

燕山君 10년(1504) 甲子士禍 때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中宗反正(1506)으로 석방되어 原從功臣에 오른 洪常이 제주도로 유배될 때 주위에서 “제주는 海路가 무려 9백리로 重罪大罰이 아니면 굳이 제주도로 유배되지 않는다. 朝野가 모두 과도 때문에 이곳을 두려워한다.”고 한 것처럼 당시의 兩班支配階級들은 제주도에의 유배를 상당히 꺼려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라고 하면 곧 <流刑의 섬>이라고 연상될 정도로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유배지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제주도로 유배되는 경우 거의 終身刑이나 다름 바 없었다. 물론 유배형에 있어서 일정한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²¹⁾ 단지 정세 변화에 따라 赦

21) 流刑이 期限制로 바뀐 것은 高宗 建陽 1년(1896)그 범위를 확장한 이후이다.

免, 석방되거나 他地로 移配되었을 뿐이며, 때문에 제주도에 10여년의 유형 생활을 보낸 사람도 많았다. 물론 개중에는 賜死되는 경우도 있었고, 赦免 후 再宦의 길이 열려 中央政界에 진출하거나 유배지였던 제주도에 다시 牧民官으로 到任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제주도에 定着하여 入島始祖가 되는 例도 許多하였다. 오늘날 제주도의 姓氏는 약 1백70여개나 되며 전체 인구 중 태반이 유배인의 자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주도에 유배된 여러 가지 특수한 예를 보면,父子가 전후하여 유배되거나 재차 유배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전가족이 유배되기도 하였다. 肅宗 때의 金春澤은, 肅宗 15년(1689) 己巳換局으로 南人이 정권을 잡고 西人이 실각하였을 때, 南人으로부터 탄핵을 받아 제주도에 유배되었던 金鎮龜의 아들이다. 일생을 유배 생활로 보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전후 5차에 걸쳐 30년 간이나 감옥·유배생활을 하였고 그 중 두 번은 제주도에서였다. 金川(황해)·扶安(전북)·海南(전남)에 이어 숙종 32년(1706) 9월 世子(景宗) 謀害의 誣告를 받고 濟州牧에 安置되었는데 이 때 그의 가족은 旌義縣에 定配되었다. 두 번째는 同王 41년에 大靜縣에 유배되었는데 그 原因은 확실하지 않으나 讓位와 관련된 역시 誣告 때문이었다. 그는 前後 6년을 제주에서 보낸 것이다. 이보다 앞서 顯宗 15년(1674) 寧陵(孝宗陵)을 옮길 때 石役 감독이 태만했다는 이유로 大靜縣 延來(稅來)에 유배되었던 申命圭와 辛壬士禍(壬寅獄)로 老論의 重鎮들이 제거되었을 때 이를 항소하다가 景宗 2년(1722) 大靜縣內 柑山村에 유배된 申鉉도父子之間이다. 申鉉의 이 때 나이는 84세의 高齡이며, 英祖 即位年(1724) 석방되어 귀향 도중에 海南에서 客死하였다. 이외에도 肅宗 때의 金三達, 英祖 때의 金一鏡, 尹志, 尹惠, 沈禎衍 등의 가족이 모두 제주도에 유배되었었다.²²⁾ 또 동일 지역은 아니지마는 전가족이 같은 시기에 분산, 유배된 예도 있었다. 景宗 即位 후에 王世弟(英祖) 冊封問題로 少論派에 의해 珍島에 유배되어 賜死된 趙泰采의 장남 昇彬이 제주도 대정현에, 차남 觀彬이 羅島에, 3남 謙彬이 巨濟島에, 妻가 黑山島에 각각 유배된 것이 그것이다. 차남 趙觀彬은 英祖 7년(1731) 大司憲 재직 중에 少論의 領袖 李光佐를 탄핵하다가 다시 大靜縣에 유배되었다.

22) 金泰能(1982), p.195.

그런가 하면 盜賊의 무리로서 유배된 후 그 횡포가 심한 경우와 유배인의 逆謀事件도 발생했다. 顯宗 때를 전후하여 제주에 定配된 罪人들이 대부분 盜賊의 무리였는데, 그 習性이 불량하여 罪人의 몸으로 다시 도적질을 일삼고 횡포를 부려 住民의 피해가 많았던 것이다. 더우기 凶年까지 겹쳐 백성들에게는 雪上加霜으로 苦痛이 따라 실로 견디기 어려운 처지였다. 때문에 이러한 弊端을 없애기 위해 顯宗 11년(1670) 11월에 도적의 무리들을 他地로 移配하여 住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으며²³⁾, 英祖 39년(1763)에는 李麟佐의 亂에 가담했다가 제주도에 유배된 沈來復·趙榮得 등이 비밀히 結社하여, 英祖를 폐하고 제주도에 유배 중인 宗臣 李嬭을 王으로 추대하려는 陰謀를 꾸미다가 事前에 발각되어 처형되었던 것이다.²⁴⁾ 당시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民亂도 대부분이 流配者나 도망자의 선동에 의한 것이었다.

楸子島를 포함한 제주도내 유배인의 分布는 高麗末로부터 朝鮮朝 중기에 이르기까지는 제주 三邑에 골고루 배치되었던 것이 말기로 넘어가면서 大靜·旌義 두 고을은 제한되고 주로 濟州牧으로 集中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英祖 33년(1768) 2월 1일 全羅道觀察使 李昌壽가 “流配人이 濟州牧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그 緣坐人을 濟州三邑으로 分散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備邊司에 稟議했던 바 그것이 승인되었다. 그런데도 계속하여 流配人이 불어나자 島民들이 몹시 이에 당황하고 있다.”²⁵⁾고 한 것이라든지, 또 謫客 金允植이 《續陰晴史》에서 “제주(목)에 謫客이 오늘날과 같이 많은 때가 없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불어나니, 장차 이 한 섬에 가득 찰 것 같다.”고 탄식한 것을 보면 위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말기의 哲宗·高宗·純宗 3代 약 60년에 걸친 시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流配人이 謫居한 시기였다. 이 기간 중에 제주도에 약 60여 명에 달하는 政治犯이 귀양살이했으며²⁶⁾, 그 중에는 當代를 풍미했던 역사적 인물들도 끼어 있었다. 崔益鉉·金允植·朴泳孝 등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 罪人이 流配地로 보내질 때 그중에는 特別한 恩典에 의해 가족이나 奴婢

23) 「濟州道誌」(上), pp. 256~257.

24) 金泰能(1982), pp. 195~197.

25) 「備邊司謄錄」 英祖 33년 2월 1일조.

26) 「濟州道誌」(上), p. 364.

의 隨從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王命에 의해 특별히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전술한 金領龜나 申命圭가 귀양왔을 때 金天澤이나 申鉉이 와서 孝親한 것이나 宋時烈의 家族과 노비의 隨從-王族인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등은 前者의 경우이며, 英祖의 近親인 李增이 유배될 때는 王이 특별히 배려해서 지나가는 各邑 守令에게 醫藥品의 보급을 지시하였고 특히 제주도의 守令들에게까지 衣類品과 藥品 따위의 보급을 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單身으로 유배지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유배인이 탄 流人船은 대개가 전라남도 海南·康津·靈巖 등지에서 출발한 후 甫吉島나 所安島·珍島를 거쳐 제주 別刀浦(禾北浦)에 도착하는 것이 常例였다. 그것은 別刀浦가 유배인이 제주에 도착한 후 濟州牧으로 引繼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始·終着地가 일정한 것은 아니었다. 宋時烈과 같이 처음에는 泰仁(지금의 忠南 瑞山郡)에서 출발하였다가 다시 康津 쪽으로 옮기는 예도 있었고 韓末 金允植처럼 仁川에서 출발하여 山地 港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에의 도착지점도 光海君과 같이 於等浦(杏源)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涯月浦(太祖 때 金萬希), 朝天館(光海君 때 盧氏夫人 鄭氏, 肅宗 때 金春澤), 威德浦(仁祖 때 金膺珠), 別刀浦(顯宗 때 申命圭, 英祖 때 任徵夏·趙觀彬, 憲宗 때 金正喜) 등으로 들어 왔는데, 이는 아마 風向과 潮流 관계였을 것이다. 여기서 유배의 路程을 예를 들어 보면, 申命圭는 顯宗 15년(1674)에 유배의 命을 받고 15일 걸려서 海南縣에 도착, 다시 6월 17일 海倉浦에 당도하여 여기서 7월 5일 출항하였는데 逆風을 만나 漁蘭浦에 定泊, 7월 8일 甫吉島에 도착, 7월 12일 甫吉島 白道里에서 출발하여 13일에 別刀浦에 도착하였다. 肅宗 때의 金春澤은 1차 제주 유배 때 海南 海倉浦에서 출항하였는데, 이때 동승한 인원이 濟州牧使 등 60여명이었으며, 甫吉島에 도착하자 風勢가 심하여 수일간 候風하고 楸子島를 거쳐 9월 말경 朝天館에 도착하였다. 任徵夏는 英祖 3년(1727) 7월초 大靜縣 移配의 命을 받고 평안남도 順安을 출발하여 金川·臨陂·靈巖·所安島를 거쳐 8월 17일 밤 別刀浦에 도착하였으며, 趙觀彬도 同王 7년 11월 20일 서울을 출발하여 10여일 만에 康津에 도착하고 여기서 日氣不順으로 15일 간이나 候風하다가 12월 17일 출항하였는데 또 날씨가 좋지 않아서 莞島·白道島(甫吉島)·所安島 등 여러 섬에서 며칠씩 후풍한 후 12월 27일에야 別刀浦에 도착하였다. 더우기 太祖 때의 李美는 不事二

君의 罪로 제주 外都에 귀양와서 많은 弟子를 육성, 배출한 인물인데,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즉 그의 長兄인 李伸이 孤島에서 쓸쓸하게 귀양살이 하고 있는 동생을 생각하여, 朝廷에 간청하여 제주 都安撫使로 부임해 왔는데, 그는 동생에게 歸鄉을 종용하다 거절당하자 강제로라도 출옥시키기 위해 別刀浦로 여행했으나 갑자기 태풍이 불고 風浪이 거세어 세 번이나 출항하지 못하자 결국 단념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전라남도 남단인 해남·강진·영암 등지는 과거 이래 제주도와 연결된 교통항인 동시에 제주도로 유배되는 유형인들의 길목이기도 하였다. 이들 지역에서 출항한 流人船들이 南海群島의 島嶼間을 지그자그 항해하며 제주도로 향하다가 갑자기 도중에서 바람의 強弱이나 潮流의 영향으로 해서 부득이 부근 島嶼에 定泊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肅宗 때의 宋時烈이나 英祖 때의 任觀周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은 우연히도 甫吉島에서 전후하여 候風하였는데 지금도 甫吉島 白道里 巖壁에는 이들의 候風詩가 陰刻되어 있다.²⁷⁾

八十三歲翁 蒼波萬里中
一言胡大罪 三點亦云窮
北極空瞻日 南溟但信風
貂裘舊恩在 感激泣孤衷

東國有尤翁 題詩白島中
斯文從古厄 大走遭時窮
留墨春秋筆 泣貂漢海風
孤臣無限感 天日照丹衷

上段은 宋時烈, 下段은 任觀周의 詩句이며, 또 이런 句節도 있다.

丁亥七月 後學任觀周 謫濟州登白島
見尤菴先生候風時 題詠追刻石面前

27) 金泰能(1982) p.155에는 宋時烈의 甫吉島 候風詩를 濟州謫居 중에 지은 것이라 했으나 잘못이다. 莞島郡:「甫吉島 尹孤山遺蹟調査報告書」1981, pp. 95~96.

丁亥 7월은 任觀周가 제주도로 유배가던 해(英祖 43:1767)이며, 이 때 그는 제주로 유배가다가 白島(甫吉島)에 들었는데 바로 여기서 尤菴의 候風詩를 보고 자신도 응답의 詩句를 지어 石面에 음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甫吉島는 孤山 尹善道の 遺蹟地로도 유명한 곳이다. 그는 黨爭과 胡亂 등으로 나라가 혼란함에 은둔 생활을 결심하고 제주도로 가던 도중 심한 폭풍을 만나 甫吉島에 대피하여(候風구미) 바다가 잔잔해 지기를 기다리다가 섬의 자연 경관이 수려함을 보고 제주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 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때문에 이 고장 사람들에게는 “제주도로 가느니 가짜운 甫吉島로 가라”는 말이 전해 올 정도이다. 그만큼 甫吉島 芙蓉洞의 孤山 유적지는 관광지로도 이름이 나 있을 뿐만 아니라 <漁夫四時詞>도 이곳에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지은 것이라 한다.²⁸⁾

제주 해협에 있는 무인도인 冠奪島는 이름 그대로 流人船이 섬 부근을 지날 때 배에 타고 있던 罪人들이 “아아! 여기까지 오면 끝장이다. 이 冠服도 이젠 쓸모가 없게 되었구나!” 하고 탄식하면서 관복을 벗고 평민복으로 갈아 입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流配人이 제주도에 도착하면 일단 濟州牧에 引繼되며, 여기서 다시 유배인을 제주목에 安置시키거나 大靜·旌義 두 고을로 분산시킨다. 즉 王族이나 高官 顯職인 경우는 주로 州城內에 안치하고 그외는 두 고을로 분산되었다. 大靜의 경우도 城內나 屯浦(新桃)·柑山·狹來·倉川 등에 보내졌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연산군 때의 金舜孫, 중종 때의 李世蕃, 광해군 때의 李弘老·鄭蘊·李瀆·李禎慶·金彥春·金德龍·宋象仁·金春澤(2차), 현종 때의 李枝達, 肅宗 때의 柳赫然·張希載·吳始復·李東悅·申遇石·金俊元·朴重慶·宋尙周·申命圭(申銓)父子, 경종 때의 李壽民·鶴孫, 영조 때의 李奎采·李重明·任徵夏·權震應·恩彥君·尹志·徐宗廈·金堯鏡·李巨源·金有慶·李宜哲·趙觀彬·任觀周, 현종 때의 金正喜 등이 있고, 旌義縣의 경우는 仁祖 때의 元悰·徐旻, 洪茂績, 현종 때 宋之兼, 경종 때의 李時弼·趙昇彬·趙聖復, 영조 때의 金聖鐸·李存中·崔鶴命 등이 있었으며, 楸子島의 경우는 정조 때의 李叢中·安祚煥, 현종 때의 尹尙度父子, 철종 때의 崔鳳周, 고종 때의 趙秉昌 등이다. 그런데 정조 때에는 楸子島에 유배된 죄인이 많아서 島民의 피해가 컸

28) 同上書(1981), p.14~15.

다는 기록도 보인다.²⁹⁾ 濟州牧의 경우는 태조 때의 金萬希·李美, 중종 때의 金淨, 燕山君 때의 洪裕孫, 명종 때의 普雨, 광해군 때의 盧氏夫人 鄭氏·趙稷, 인조 때의 광해군·李建 등 王族과 李敬與, 숙종 때의 宋時烈·金鎭龜·金春澤(1차)·李震尙·李顯命·경종 때의 金壽天·柳星樞, 영조 때의 金遠材·李增, 철종 때의 李明赫, 고종 때의 崔益鉉·金允植·朴泳孝 등이 있다.

濟州三邑 중에서도 특히 대정현은 정치적 중죄인의 유배지로 생각되었다. 그것은 서울에서 絶遠奧地로 생각한 때문일 것이다. 중종 7년(1512) 正月 제주 목사로 도임하여 同王 9년 6월에 離任한 바 있는 金錫哲(당시 漢城府左尹)의 상함에 “대정현에는 瘴癘로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邑에 속한 軍士가 三旅라고는 하지만 이름뿐이고 실체는 一旅가 될까 합니다. ……同縣에 流移한 公賤들은 지금 제주 목사가 하나 하나 본토로 刷還시키고 있는데, 이 섬 인심이 심히 豪猾하여 많은 良民을 점유하고 戶首를 許接해서 使喚으로 삼아 곧 보내지 아니하니 역시 公賤들이 숨기 좋은 예입니다. 그러므로 전가족을 本縣에서 옮기어, 招引하여 投托하는 弊를 없이 할 것이며, 또 京中에서 죄를 지어 公奴婢로 定屬한 범죄인 가운데 제주로 들어오는 자는 모두 이 縣에 所屬시켜서 殘縣을 충실하게 함이 어찌 하오리까?”³⁰⁾ 하니 王이 아뢴대로 시행하라 하였는데, 이것은 대정현이 조성왕조의 최악의 유배지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우기 조선초부터 充軍·爲奴刑인 경우는 대부분 대정현으로 정배시켜 왔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燕山君 때 內官 金舜孫을 대정현에 充軍하였고, 조선조 말기 高宗 때에도 제주출신의 特典을 악용하여 자기의 出身地를 속여 科擧에 응시했던 具星喜·金性復·李禧蕙·南廷諱·朴泳薰·閔泳序등이 모두 대정현에 充軍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조선조 약 5백년을 통하여 술한 人士가 제주도에서 적거 생활을 했으며, 따라서 이들이 제주도에 미친 영향도 대단하였던 것이다. 學問과 知德을 겸비한 정치가 학자들이 이곳에 많이 유배됨으로써 지방인 子弟들이 그들에게 師事하여 그들의 학문과 사상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³¹⁾ 그 대표적인

29) 「正祖實錄」14, 正祖 6년 8월 丁亥條.

30) 「中宗實錄」19, 中宗 8년 12월 庚申條.

31) 金泰能(1982), p. 47.

人物로는 中宗 때의 金淨과 李世蕃, 光海君 때의 鄭蘊, 顯宗 때의 申命圭, 肅宗 때의 金鎭龜, 金春澤, 英祖 때의 趙觀彬, 任徵夏, 正祖 때의 趙貞喆, 憲宗 때의 金正喜, 高宗 때의 崔益鉉·金允植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들은 지방 자제들을 謫所에 모으거나 私塾을 마련하여 學問을 가르치고 예의범절을 전수했던 것이다. 때문에 뒤에 그들의 功績을 기리기 위해 謫所 부근에 遺墟碑를 세우거나 祠堂을 세워 그들을 祭享하기도 하였다. 五賢壇(橘林書院의 後身)과 松竹祠(대정현)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이들 謫居者들은 제주도에 유배된 후 著述에 몰두하기도 하였다. 鄭蘊이 《德辨錄》·《望北斗詩》·《望白雲歌》를 지어 愛君憂國의 情을 나타내었는가 하면 宋時烈的 《宋子大全》도 제주 유배 중에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著述 중 제주도와 관계있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도 많다. 金淨의 《冲庵集》(濟州日記·濟州風土錄), 鄭蘊의 《桐溪集》, 李健의 《葵窓集》(濟州風土記), 申命圭의 《默齋記聞錄》, 金春澤의 《北軒集》, 任徵夏의 《西齋集》, 趙觀彬의 《晦憲集》, 趙貞喆의 《靜軒瀛海處坎錄》, 金正喜의 《阮堂集》 등은 그 대표적인 것 들이다.

한편 王族이나 高官·顯職 등 상류사회 인사들의 적거와 그 從者들의 제주 왕래는 의식주의 개선이나 언어와 예절, 습속을 순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IV. 結 論

이상에서 朝鮮朝의 流刑制度和 濟州 流配人의 動向을 간략하게 一瞥하여 보았다. 아래에 그 내용을 요약해 봄으로써 結論에 대신하고자 한다.

朝鮮朝의 基本法典인 《經國大典》이나 《續大典》 등에 “《大明律》을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明示되어 있듯이 朝鮮王朝의 刑罪體系는 中國 明나라의 《大明律》을 準用하였다. 이에 따라서 刑罰도 《大明律》에 의거하여 笞刑·杖刑·徒刑·流刑·死刑 등 5種으로 나누었으며, 그중 流刑은 주로 政治犯에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사람이 重한 죄를 범했을 때 차마 死刑까지는 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귀향보내어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었다. 그 等級도 500리를 기준으로 2천 리에서 3천리까지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지리적 제약이 있어 流刑 3등급이 불합리했으므로

《大明律直解》나 世宗 12년 5월의 兵曹의 啓에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죄인의 거주 지역을 표준으로 하여 어디서 어디로 귀양보낸다는 거리 중심의 流配地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流刑은 주로 王命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고 또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때 그때의 정치 상황이나 죄인의 신분차 죄의 輕重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그 집행에 있어서는 주로 遠地나 無人島·有人島 등이 정해졌으며 그곳에 安置하거나 充軍하는 방법도 있었다.

제주도는 육지와는 격리된 絶海孤島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流刑의 最適地였다. 그것은 죄인을 먼 곳에 보내어 격리시킨다는 의미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朝鮮朝 약 500년을 통하여 거의 200명에 달하는 유배객들이 제주도에 귀양살이를 했으며, 그 신분도 위로는 王族이나 政治人·學者로부터 僧侶와 宦官 盜賊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었다. 당시의 流刑은 期限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終身刑이나 다름이 없었으며, 다만 情勢 변화에 따라 放免되거나, 赦免 후 再宦의 길이 열려 다시 中央政界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賜死되거나 他地로 移配되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赦免 후 아주 제주도에 定着하여 入島祖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 分布로 본다면 제주 3군 중 濟州牧에는 王族이나 高官·顯職에 있었던 사람이 주로 安置되었고, 그 외는 大靜縣이나 旌義縣에 分散되었다. 특히 大靜縣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최악의 유배지로 생각되어 充軍이나 爲奴刑의 죄인도 많이 보내어졌다.

이들 流配人들은 전라남도 康津·海南·靈巖 等地에서 출발하여 甫吉島·莞島·所安島 등을 거쳐 제주 別刀浦(禾北)로 들어오는 것이 常例였으나, 때로는 風向이나 潮流의 영향으로 일정하지가 않았으며 그 路程도 순탄하지 못했다. 때문에 제주 해협을 건너 오가는데 한 두 달 걸리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도중에 태풍을 만나 漂沒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으로 많은 流配客들이 그들의 謫所에 지방민 子弟들을 불러 모으거나 혹은 私塾을 마련하여 學問과 지식을 전달하는등 학문향상이나 문화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다.